

2 공익법인회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17년 11월 3일(금) 은행회관에서 공익법인회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원고는 공청회에서 발표 및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수록하였다.

가. 개요

1. 주제 :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방향
2. 일시 : 2017.11.3. (금) 14:00~16:00
3. 장소 : 서울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4. 주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나. 주제발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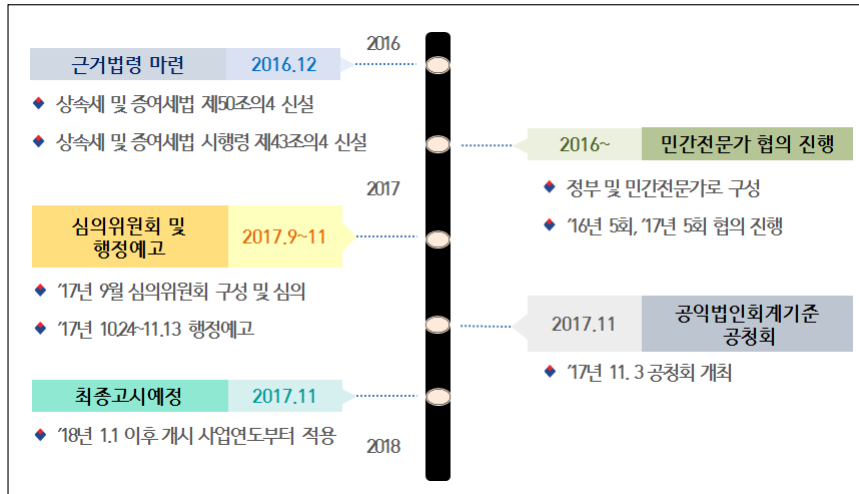
1) 공익법인회계기준 개요

□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배경

-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및 회계감사 의무는 있으나 관련 회계기준은 없었음
- 공통된 회계기준의 적용을 통해 공익법인간의 재무정보 비교가능성 제고
- 공익법인이 공시하는 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

□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과정(그림 참고)

- 2016년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법령 마련함
- 정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회계기준 제정 TF를 구성하여 기준안 마련
-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통해 기준안 확정
- 2017년 10월 공익법인회계기준 행정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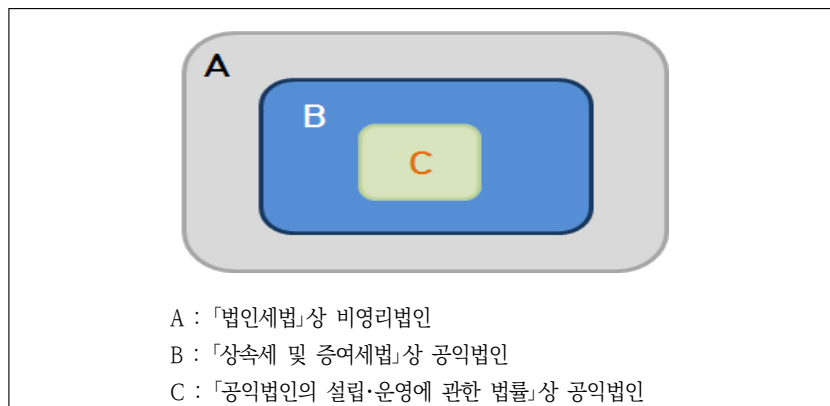


2) 공익법인이란

□ 공익법인의 개념 및 범위(그림 참고)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의 법인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정하지 않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정함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보다 좁은 범위로 공익법인을 규정함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범위



□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

-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그림의 'B'에 해당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이 의무적용대상임
- 공익법인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공익법인(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경우)
- 2016년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34,743개이며, 이 중 의무공시 대상은 8,585개

2016년 공익법인 현황

(단위: 개)

	종교	사회복지	교육	학술장학	예술문화	의료	기타	합계
신고단체수	18,360	3,537	1,770	4,455	1,367	1,001	4,253	34,743
의무공시	-	2,068	1,614	2,214	517	969	1,203	8,585

출처 : 한국가이드스타, 『2016한국공익법인연감』

□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공익법인의 경우 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
- (기준서상 제외) 공익법인회계기준안 제4조 제2항(복식부기) 및 제3항(발생주의)에 따른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적용을 제외함

3)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주요 내용

□ 총칙

- 공익법인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으로 구성됨
 - 재무제표에서 현금흐름표를 제외하여 현금흐름표 작성 의무 완화
 - 순자산변동 내역에 대해 주석 공시
- 재무제표의 작성은 공익법인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고유목적사업부문과 수익사업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함

□ 재무상태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세제 혜택을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비용, 부채 인식이 가능하도록 규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지 않고 별도 표시
- (순자산의 구분) 순자산은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여금액으로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함
 - 기본순자산 :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 보통순자산 : 기본순자산이나 순자산조정이 아닌 순자산
 - 순자산조정 : 순자산의 가감성격으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등

□ 운영성과표

- (사업과 사업외의 구분) 사업수익(비용)과 사업외수익(비용)을 구분함
 - 수익 및 비용이 경상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수익(비용)과 사업외수익(비용)으로 구분
- (사업수익 분류) 사업수익은 고유목적사업수익과 수익사업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함
 - 고유목적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기부금 등의 수익인식)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 인식
 - 기부금 등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함
- (사업비용 분류) 사업비용은 고유목적사업비용과 수익사업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함
 - 고유목적사업비용은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
 -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에 대해서는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음
 -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구분표시하여 정보이용자(기부자 등)에게 유용한 정보제공
- (법인세비용)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법인세회계와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 회계처리 방법을 고려하여 법인세비용 인식
- 공통수익(비용) 및 자산(부채)의 배분
 - 공통수익(비용)의 배분 : 어떤 수익과 비용항목이 복수의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 합리적인 배분 기준(업무시간, 시설면적, 사용빈도 등)에 따라 배분
 - 공통자산(부채)의 배분 : 어떤 자산과 부채항목이 복수의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 합리적인 배분 기준(시설면적, 사용빈도 등)에 따라 배분

□ 자산·부채의 평가

- (유형자산 재평가)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할 수 있음
 - 재평가이익의 인식 :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증가된 경우 증가액을 순자산조정으로 인식, 이전에 운영성과표에 사업외비용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을 사업외수익으로 인식
 - 재평가손실의 인식 :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감소된 경우 감소액은 운영성과표에 사업외비용으로 인식, 이전에 재평가로 인해 인식한 순자산조정 잔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순자산조정에서 차감

- (유가증권의 평가) 유가증권은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며 일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함
 -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하고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

다. 토론 요약

1) “법 적용에 관해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중요함”

김미라(한국 NPO 공동회의 기획분과위원)



현재 주무부처에 따라 각기 다른 회계기준 및 보고양식을 사용하여 결산 및 보고를 수행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서의 시행 후, 각 부처에서 동일한 회계기준 및 양식 적용을 통해 실무적으로 이중행정으로 인한 비효율성 및 충돌이 없기를 기대하는 바다. 또한, 정부보조금을 받는 시설법인은 이 법과 다르게 해석하는 지자체의 시정명령 또는 행정지시 사항이 있는 경우, 동일한 기관에서 상이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정보이용자의 혼란이 야기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있으면 한다.

세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이 충돌하지 않도록 세심한 조정 또한 필요하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부채인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에서 신고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경우 실무자들이 부채인식을 할지 신고조정을 할지에 대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부동산은 반드시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기본순자산으로 표시되는 반면 다른 법인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기본재산이 아니라면 보통순자산으로 표시되어 정보이용자들의 이해가능성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법령 조정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공익법인 공시양식이 이 기준서의 형식을 따라야 한다. 실무담당자의 업무혼선 및 업무 가중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맞춘 통일된 양식이 필요하다. 또한 기준안 제6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회계기준을 적용할 시 국세청 공시 양식에 관련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개정 기준안 내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자면, 재무제표 양식 중 현금흐름표 작성 의무 완화에 대한 입법 취지는 이해하나, 현금흐름표는 유동성 관리 능력 및 재무탄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재무제표 이므로 추가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주식에 기금의 잔액관리 명세서가 추가되어야 함을 건의한다. 공익법인회계의 핵심은 기금 관리이므로 기금 및 기부금의 사용에 대해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기부자들에게 중요한 정보 제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로, 기부금의 제약 형태(일시적 제약, 영구적 제약)에 대해 수익인식시점부터 구분되어 운영성과표에 변동내역이 표시되어야 한다. 기부자의 의도와 시간상 제약에 따른 일시적, 영구적 제약에 대해 수익인식시 구분되어야 하며, 제약의 해제된 흐름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

넷째로,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기부금의 경우 수익 미인식에 대한 문제이다. 기부물품에 대한 수익 인식 없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으로 인해 기부금영수증 총발행내역과 기부금 수익 간 불일치에 대한 실무자의 추후 업무 가중이 야기될 수 있어, 국세청 자료와의 차이 소명 업무의 유예 및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로, 운영성과표의 수익사업을 구분 표시할 때 매출액, 매출원가를 표시하는 것이 정보제공 목적에 보다 유용하다. 현재의 양식을 유지할 경우 하위 항목으로 매출액을 표시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여섯째로, 무형자산상각비의 분류에 대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무형자산상각비도 시설비용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자수익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 고유목적 사업활동의 주된 원천인 경우 사업수익으로 분류하도록 되어있는데, 투자자산이 아닌 운영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의 경우에도 사업수익과 사업외수익의 구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2) “법의 제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사후 관리 필요”

박두준(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



회계기준의 정착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해설 및 작성지침이 만들어져야 하며,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사례 및 내용이 담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시대상에 해당하는 수천 개 공익법인의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 및 원활한 질의응답이 필요할 것이다.

세부적인 해설 및 작성지침에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비용의 자의적 조정을 통한 재무제표 왜곡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능별 비용표시에 대해 경영자의 비용 조정에 대한 예방책 및 세부방법 등이 담겨져야 한다.

국세청 공시양식 또한 기준서 제정에 따라 내년에 개정이 필요해 보이며, 법의 제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 드린다. 과거 공익법인에 대한 여러 가지 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법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존재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도 제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들이 잘 적용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모니터링 및 관심이 필요하다.

3) “공익법인회계기준이 가지는 특징”

변영선(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그동안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부재로 인해 작성자뿐 아니라 회계감사 및 세무확인을 해야 하는 전문가의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번에 마련된 공익법인회계기준의 특징을 살펴보면, 회계기본원칙을 준용하려고 했으며 공익법인의 회계 실정을 반영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보 작성자 측면에서는, 현금흐름표 배제, 운영성과표 양식,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의 인식 방법, 순자산의 구성 등 증소공익법인의 의견을 많이 담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 이용자 측면에서는, 주식에서 비용의 기능별, 성격별 구분과 중요 거래정보의 제공은 기부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회계기준은 정보제공자가 쉽게 기술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이용자도 범용적으로 이용 가능한 방법으로 서술되어야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마련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세부 규정에 대한 보완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계기준이 가져야 할 질적 특징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된다. 다만, 실무지침이나 해설서가 조속히 마련되어 실무 혼선을 막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

4) “공익법인 실무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돼야”

최원석(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그동안 회계기준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주무부처, 규모, 기능 등의 차이로 일관적인 회계기준제정은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들의 회계지식수준 차이로 인해 공익법인회계 기준이 중소기업의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들에게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소규모 공익법인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완충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집체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dBrain처럼 국가차원의 표준화된 전산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보생산자 모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도 제안하는 바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업무위탁을 하게 되었을 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질의회신이나 해설서 작성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제도적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작성된 공익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제고가 필요한데 특히,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공익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등 전문가 단체의 자율적인 TF추진 및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노력해 줄 것을 제언한다.

5) “공익법인 회계 기준은 건전한 기부 문화 형성에 첫걸음”

이용주(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은 회계정보의 정확성 및 투명성, 공익법인의 특수성, 공익법인의 부담 최소화와 같은 3가지 원칙을 고려하여 제정되었다.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세부적인 구분의 필요성이 있지만 영세 공익법인의 부담을 고려하여 회계기준에 다루지 못하는 점이 존재한다.

현재 행정예고 중에 있으므로 제출되는 의견을 고려하여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미진한 내용 및 사업비용 구분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등은 추후 실무지침 등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며,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한 지원도 고려할 예정이다.

정부부처에 따라 이원화된 회계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존재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정부 보조금의 관리목적으로 단식 현금주의를 적용하나, 공익법인의 정보 이용자는 기부자이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복식부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익법인에 대해 부처 간의 통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하나의 부처에서 대답하기는 어렵고, 정부 및 민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다만, 오늘 토론에서 논의된 국세청 공시서식 문제는 회계기준 제정 이후 내년 초 공시서식 개정 예정이며, 영세한 공익법인의 적용 유예도 검토 예정이다.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기부금의 수익 미인식으로 인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총액과의 차이 발생 문제는 국세청의 사후관리 시 설명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공익법인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의 재무제표는 정부의 개입보다는 한국공인회계사회나 한국가이드스타 등 민간의 자율적인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공익법인회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11.3.), 서울 은행회관2층 국제회의실〉

3 한국회계정보학회 2017 추계학술대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세션 운영

국가회계분야 연구성과물 확산 및 전문가 저변 확대 등을 위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한국회계정보학회 2017 추계학술대회'에서 '국가회계재정통계세션'을 운영함

가. 개요

1. 일시 : '17.11.18.(토) 14:30 ~ 15:45
2. 장소 :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 701호
3. 주최 : 한국회계정보학회